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직인생략

㉾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,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33/전송(02)796-4487
보험정책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임주연 [6533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9231

시행일자 2020. 11. 2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개정고시(제2020-244호)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562호(2020. 10. 30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고시를 일부개정하고 안내하여 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개정사항 : 신설 2항목, 변경 8항목 (붙임자료 참조)
○ 시행일 : 2020. 11. 1.(일)

#붙임: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일부개정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16개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